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24(목)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9. 11. 24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09. 11. 24

라. 상정일자 : 2009. 12. 17 (제178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이사장, 이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하고, 상임이사 정수 관련 문구를 법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9조)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 수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동 조례안은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의 임기관련

-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현행 사장 임명에 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비상임이사 포함), 감사 등 모든 임원(당연직 제외)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여 공사 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 이사회의 권한 삭제 관련(안 제12조)

- 현행 제12조 제3항, 제4항, 제5항 이사회의 권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삭제되는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이사회) 제3항 규정에 의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이사회에 감사가 출석하여 의견진술,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 등이 정관에서 정해지게 됨.

#### ○ 기타 수정사항으로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시의 공사·공단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조문 내용을 통일할 필요성에 따라 수정하는 사항으로는

- 안 제7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수정하고
- 안 제9조제2항 중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다”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김소림 의원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일은 언제인지
  -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 답 변 >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4월, 동법 시행령은 9월에 개정되었음.

####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없음
- 나. 반 대 : 윤지상, 김소림, 지정구, 이상철, 조남휘 위원

#### 6. 수정안 요지

- 안 제7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수정

- 안 제9조제2항 중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다.”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5명)

## 8. 기타사항

- 없음

붙임 :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다.”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임원) ① (생략)</p> <p>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u>                      -----                      -----</p>	<p>7조(임원)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  <u>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u>                      -----                      -----</p>
<p>제9조(이사) ① (생략)</p> <p>1. <u>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2인 이내로 한다.</u></p> <p>2. (생략)</p> <p>② <u>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p> <p>1. <u>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② <u>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한다.</u></p>	<p>제9조(이사) ①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② <u>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직원의 임·면”을 “직원의 임면”으로 하고, “임·면한다”를 “임면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20조 제목 중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 를 “회계처리” 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6조제2항 중 “각호” 를 각각 “각 호” 로, “기타” 를 각각 “그 밖에”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u>각호</u>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 ~ 12. (생략)</p> <p>13. <u>기타</u> 필요한 사항</p> <p>② (생략)</p> <p>제7조(임원) ① (생략)</p> <p>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u>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인 천광역시공사·공단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정관) ① ----- -- <u>각 호</u>----- 1. ~ 12. (현행과 같음) 13. <u>그 밖에</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임기는 <u>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u> ----- -----.</p> <p>제8조(이사장) ① ----- ----- <u>「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p> <p>1. <u>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2인 이내로 한다.</u></p> <p>2. (생략)</p> <p>② <u>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생략)</p> <p>제12조(이사회) ① ~ ② (생략)</p> <p>③ <u>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u></p> <p>④ <u>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p> <p>⑤ <u>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⑥ (생략)</p>	<p>제9조(이사) ① (현행과 같음)</p> <p>1. <u>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② <u>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이사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⑥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6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가 임·면한다.</p>	<p>제16조(직원의 임면) ----- ----- --- 임면한다.</p>
<p>제17조(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탁 대행한다. 이 경우 공단은 위탁자와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생략)</li> <li>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li> <li>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등</li> </ol> <p>② ~ ③ (생략)</p>	<p>제17조(사업) ① ----- 각 호-----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li>5. 그 밖에 -----</li> <li>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 -----</li> </ol>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생략)</li> </ol> <p>② (생략)</p>	<p>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 ----- ----- 각 호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계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한다.</p> <p>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한다.</p>	<p>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 ----- ----- ----- 회계처리한다.</p> <p>② ----- ----- 회계처리 ----- ----- -----.</p>

현행	개정안
<p>제26조(감독) ① (생략)</p> <p>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p> <p>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시의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p>	<p>제26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각 호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그 밖에 ----- -----</p> <p>제30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 -----.</p>